

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1. . .
발 의 자	송용자 의원 외 7명

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(송용자 의원 대표 발의)

의 안	
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21. . .

발 의 자 : 송용자 · 김낙관 · 김재우 · 안주찬
이선우 · 이지연 · 장미경 · 홍난이
의원(8인)

1. 제안이유

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인류애 실현,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구미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
나. 시장의 책무, 장려사업계획의 수립(안 제3조~4조)

다.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(안 제5조~10조)

라. 헌혈장소 설치 지원, 홍보 및 정보 제공, 헌혈의 달 지정·운영(안 제11조~13조)

마. 접수·등록창구 설치, 등록기관의 업무(안 제14조~15조)

바. 헌혈자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,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, 포상(안 제16~18조)

사. 비밀준수 의무(안 제19조)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혈액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
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다.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4. 21. ~ 4. 28.) 결과 의견없음

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·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헌혈”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(無償)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장기등·인체조직”이란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장기이식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호와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인체조직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”이란 건강한 구미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”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「장기이식법」 제14조 및 「인체조직법」 제7조의2에 따라 등록

한 사람을 말한다.

5. “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자”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「장기이식법」 제15조 및 「인체조직법」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들이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장려사업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
2.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
3.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
4.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
5.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 설치) 시장은 시민의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
2.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
3.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
4.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
2.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직능단체장,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
3.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단체 임원, 종교단체 지도자
4. 시 관내 기업체 대표, 언론인, 체육인 및 예술인
5.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자

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2회 이상 불참한 경우
3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헌혈 장소 설치 지원)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공공장소
2.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

제12조(홍보 및 정보제공)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
2.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
3.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

제13조(헌혈의 달 지정·운영)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접수·등록창구 설치) 시장은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5조(등록기관의 업무) 시장은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
2.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

제16조(헌혈자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) 시장은 헌혈자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을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을 한 날부터 1년 내 한 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한 날부터 독감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날까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.

제17조(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) ① 시장은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장기 기증 사망자에게 구미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
2.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

3.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프로그램 지원

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.

제18조(포상)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9조(비밀준수 의무) 이 조례에 따라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를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와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관계법령

□ 「혈액관리법」

제4조(헌혈 권장 등)

① ~ ②. 생략

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

제2조(헌혈의 권장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·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□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기등”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신장·간장·췌장·심장·폐

나. 말초혈(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·골수·안구

다. 뼈·피부·근육·신경·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 손·팔 또는 발·다리

라.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·고시한 것

마.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·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, 장기등의 적출·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□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조(장기등의 정의)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마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3호는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.

1. 췌도(膵島)

2. 소장

3. 위장, 십이지장, 대장, 비장

4. 삭제<2019. 7. 16.>

5. 말초혈(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)

□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인체조직”이라 함은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뼈·연골·근막·피부·양막·인대 및 건

나. 심장판막·혈관

다.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,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

제5조의2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, 조직의 기증·관리 및 이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○ 조례안 제16조(헌혈자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)
시장은 헌혈자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을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을 한 날부터 1년 내 한 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최근 3년간 구미시 헌혈자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(29,692명) 평균 50%(14,846명)에 대해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면 총사업비는 519,610천원이 소요되며,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진료 등 경제적 손실 발생에 따른 보상비 지급이 필요하므로 10,000천원 정도 별도 예산 편성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						
	○						
	소계(a)	0	0	0	0	0	0
세출	○ 접종비	520	520	520	520	520	2,600
	○ 이상반응보상비	10	10	10	10	10	50
	소계(b)	530	530	530	530	530	2,650
□ 총 비용(a-b)		530	530	530	530	530	2,65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					
도 비						
시 비	530	530	530	530	530	2,650
민 간						
기 타						
합 계	530	530	530	530	530	2,650

5. 부대의견 : 해당없음

6. 작 성 자 : 소속)보건행정과 직급)간호6급 성명)남기량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○ 비용산출 내역

(단위:백만원)

계	독감 예방접종비	이상반응 보상비	비 고
530	520	10	(1년)

○ 최근 3년간 헌혈자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

연평균	2018년	2019년	2020년
29,692명	32,324명	30,665명	26,087명

※ 헌혈자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 중 독감백신 접종의 번거로움 (불필요) 및 독감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헌혈자 중 50%정도만 접종한다고 가정하면 접종자수는 29,692명 × 50% = 14,846명 정도임

▪ 독감 예방접종비 : 14,846명 × 35,000원 = 519,610천원 (※ 1인당 : 35,000원)

▪ 이상반응 피해보상비 : 10,000천원

-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병원 진료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비 편성